

충청북도학생회관설치 및 사용에관한 조례안

심사 보고서

1. 심 사 . 결 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 교육감

나. 제출 및 재회부일자

○ 제출일자 : 1991년 11월 12일

○ 회부일자 : 1991년 11월 13일

○ 재회부일자 : 1991년 11월 26일

다. 상정일자 : 제 74회 정기회

○ 제4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 12.11)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중등교육국장 나세용)

가. 제 안 사 유

청소년들의 교양증진, 소질개발, 정서순화등 전인교육에 기여하고 여가 선용을 통한 특별활동의 장을 마련하여 전전한 인격체로 육성하기 위하여 "충청북도학생회관설치 및 사용에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나. 주 요 골 자

1) 청소년 문예활동의 공간과 공연장(연극, 영화, 음악등)을 제공하여 문화, 예술활동 등을 장려하고 인격도야를 위한 도서실을 운영함.

2) 조직으로 관장, 총무과, 운영과, 도서과를 두며, 관장은 장학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함.

- 3) 학생회관의 시설물을 사용할 때는 사용료를 실비로 징수하되 회관의 설립 목적에 상응하거나 관장이 인정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함 (사용료 감면율은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관장이 정한다.
- 4) 충청북도 학생회관은 충청북도학생회관을 흡수 통합하고 그의 권리, 의무 및 소속공무원을 승계함.

3. 재 검토 사유

(문교사회위원회 김재근위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2조 (공무원의 배치)에 있어 국가공무원인 장학관을 배치하기 위하여는 교육부장관의 정원 승인을 득하고 대통령령이 개정된 후에 다시 다루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생각되어 당초 교육위원회에 수정안으로 제출된 제4조 1항의 회관에 관장을 두되 "장학관 또는 지방서기관"의 내용을 "장학관 또는"부분을 삭제하여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됨.

4. 검토 의견

(전문위원 김영만)

충청북도 학생회관 설치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을 재 검토한 바,
 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의해 학생회관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은바 있으나, 당초 제출 승인안인 관장을 "지방서기관"에서 "장학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도록한 수정조례안의 내용은 동법 제 42조1항에 의하면 지방교육기관의 공무원 배치는 당해 시.도의 교육비 특별회계가 부담하는 경비로써 지방공무원으로 배치하여야하며, 제2항에 따라 국가공공원을 두기 위해서는 교육부와 총무처, 경제기획원 등 부처간의 협의하에 대통령령 개정이 필요함.

나. 또한 동법 제40조 제5항의 규정을 살펴보면 타 시, 도(광주, 전북)의 경우 관장이 지방서기관으로 배치되어 운영하고 있는 점과 비교하여 균형 유지에도 다소 문제가 있음.

다. 그러므로 충청북도교육감의 명의로 제출된 충청북도학생회관 설치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 제4조 1항의 학생회관에 관장을 두되 장학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라는 조항을 "장학관 또는"의 부분을 삭제하여 수정 의결하고 국가공무원인 장학관에 대하여는 추후 다시 다루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 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토 론 요 지 : 해당사항 없음.

7. 심 사 결 과 : 수정안 가결.

8. 소수 의견 요지 : 해당사항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가. 수정 조례안 : 별 첨

나. 관계 법령 : 별 첨

다. 충청북도학생회관설치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 1부.

○ 충청북도학생회관설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수정(안)

제 출 (안)	수 정 (안)
<p>제4조 (관장) ① 회관에 관장을 두되 <u>장학관</u> 또는 지방서기관 으로 보한다.</p>	<p>제4조 (관장) ① 회관에 관장을 두되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p>

地方教育自治에 관한法律

(1991. 3. 8)
法律 第4347號

第2節 補助機關 및 所屬教育機關

第40條 (補助機關) ①教育廳 밑에 國家公務員으로 補하는 副教育廳을 두되, 그 職級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②副教育廳은 當해 市·道教育廳이 추천한 者를 教育部長官의 提請으로 國務總理를 거쳐 大統領이 任命한다.

③副教育廳은 教育廳을 補佐하여 事務를 처리하며, 教育廳이 事故가 있을 때에는 그 職務를 代理한다.

④教育廳 밑에 필요한 補助機關을 두되, 그 設置·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⑤教育廳은 第4項의 規定에 의한 補助機關의 設置·운영에 있어서 合理化를 도모하고 다른 市·道와의 均衡을 유지하여야 한다.

第41條 (教育機關의 設置) ①教育廳은 그 所管事務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때에는 大統領令 또는 當해 市·道의 條例가 定하는 바에 依하여 教育機關을 設置할 수 있다.

②教育廳이 第1項의 教育機關을 當해 市·道의 條例로 設置하고자 할 때에는 教育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第42條 (公務員의 配置) ①教育廳의 補助機關과 第41條 第1項의 教育機關 및 第43條의 下級教育行政機關에는 當해 市·道의 教育費特別會計가 부담하는 經費로써 地方公務員을 두되, 그 定員은 法令과 教育部長官이 定한 標準에 依하여 市·道의 教育規則으로 定한다.

②教育廳의 補助機關과 第41條 第1項의 教育機關 및 第43條의 下級教育行政機關에는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國家公務員을 들 수 있다.